#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49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정준호·복기왕·박희승

이춘석 · 이학영 · 박용갑

안태준 · 임호선 · 이연희

부승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남성·아동 등에 가해진 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조사가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회동의를 거쳐 2003년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제1항은 인도에 반한 죄의 유형으로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 성매매,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등을 제시하고 있어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한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진상규명의

범위에는 성폭력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법과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사건 진실규명 및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성폭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배제되어 있던 성폭력사건에 대한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진실·화해를위한과 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성폭력 진상조사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36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살"을 "성폭력·학살"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실종"을 "실종·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구성"을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을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사건의 진실규명 및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건 중 성폭력사건에 대한 신청은이 법 시행일(법률 제〇〇〇〇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

다.

제25조제1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의2(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① 진실규명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건 중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이하이 조에서 "성폭력희생자등"이라 한다)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성폭력희생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그 성폭력희생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성폭력희생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폭력희생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성폭력희생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

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희생자 또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8.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희생자 또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	제1조(목적)
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	
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u>학살</u>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	<u>성폭력·학살</u>
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	
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	
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	
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	4
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	
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	
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 <u>실종</u> 사	<u>실종·성</u>
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5. • 6. (생략)

② (생략)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생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략)

<신 설>

-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생 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 호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 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 신 설>

에	Ī	7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
위	를	말한대	구)		

- 5. · 6.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 폭력 사건의 진실규명 및 조사 를 위한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 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u>구성·업무 및 운영,</u> 제2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구성・업무 및 운영-----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현행 과 같음)

②		
	디마	제9조제1하

제4호에 따른 사건 중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청은 이 법 시 행일(법률 제〇〇〇〇호 진

③ (생략)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 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u>3</u>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u><신 설></u>

	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하
	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25조(조사기간) ①
	<u>5</u>
	<u>년간</u>
	2
	<u>3년</u>
	<u>.</u>
•	③ (현행과 같음)
<u>제</u>	36조의2(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① 진실규명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
	하는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
	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건 중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
	생자 또는 피해자(이하 이 조

에서 "성폭력희생자등"이라 한다)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성폭력희생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그 성폭력희생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성폭력희생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폭력 희생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성폭력희생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신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피해 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상담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제45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 ②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 6. (생략) <신 설>

<신 설>

등에 관한 법률 | 제27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 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 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희생자 또 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희생 자 또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8.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희생자 또

	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u>자</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